

## □ 國公立大學圖書館協議會 會則

제 정 1979. 5. 25 (제28차 총회)  
1차 개정 1981. 5. 8 (제30차 총회)  
2차 개정 1982. 6. 18 (제32차 총회)  
3차 개정 1984. 6. 29 (제36차 총회)  
4차 개정 1989. 7. 7 (제41차 총회)  
5차 개정 1992. 7. 11 (제44차 총회)  
6차 개정 1997. 7. 14 (제49차 총회)  
7차 개정 2001. 12. 21. (제53차 총회에서 위임)

### 제1장 총 칙

제1조 (명칭) 본회는 국공립대학 도서관협의회라 칭한다.

제2조 (위치) 본회의 사무실은 회장교 도서관내에 둔다.

제3조 (목적) 본회는 국공립대학 도서관의 상호협력과 업무의 질적 향상을 도모  
함으로써 대학의 교육 및 연구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4조 (회원의 자격) 본회의 회원은 국공립대학 도서관장 및 중견관리자로 한다.

### 제2장 조 직

제5조 (임원)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.

1. 회장 1인
2. 부회장 2인
3. 이사 약간인
4. 감사 2인

제6조 (임원선출) 회장, 부회장,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.

제7조 (임원의 임무)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각급 회의 의  
장이 된다.

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는 회장 권한을 대행한다.

③ 이사는 본회의 중요업무를 심의 의결한다.

④ 감사는 본회의 경리 및 회무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.

제8조 (임원의 임기)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 다만, 임원의 보직이 경질되었을 경우에는 그 후임자로 하여금 잔임 기간 보임토록 한다.

### 제3장 임원회

제9조 (임원회 구성) ① 본회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임원회를 둔다.

② 임원회는 회장,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.

③ 임원회는 회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. 다만,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장은 7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.

④ 감사는 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제10조 (임원회의 의결 정족수) 임원회는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인원 과반수로써 의결한다.

제11조 (임원회의 의결사항) 임원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
-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
- 회장이 제안한 사항
- 기타 필요한 사항

### 제4장 사업

제12조 (사업)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.

- 도서관 업무개선에 관한 공동연구 및 건의
- 도서관 업무에 관한 간행물 출판
- 실무연수 및 도서관학 세미나 개최
- 도서관 자료의 교환
- 각 대학과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의 및 정보교환
- 도서관업무 전산화 추진에 관한 협의
- 회원 표창에 관한 사항(세부규정은 별도로 정한다.)
- 기타 필요한 사항

## 제5장 회의

제13조 (총회) ① 본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를 둔다.

② 정기총회는 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은 1개월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제14조 (정기총회 의결사항) 정기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
1. 회칙의 개정
2. 임원개선
3. 감사결과 보고 및 결산 승인
4.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
5. 임원회에 위임 사항
6. 기타 필요한 사항

## 제6장 재정

제15조 (재정) 본회의 재정은 회비와 보조금, 찬조금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.

제16조 (회비) 회비에 관한 사항은 총회에서 결정한다.

제17조 (회계 연도) 본회의 회계연도는 7월 1일부터 익년 6월 말일로 한다.

## 제7장 사무국장 및 총무

제18조 (사무국장 및 총무) ① 본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장 및 총무를 둔다.

② 사무국장 및 총무는 회장이 위촉하고 총회에 보고한다.

③ 회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장 및 총무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## 부 칙

본 회칙은 1979년 5월 25일부터 시행한다.

본 회칙은 1981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.

본 회칙은 1982년 6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본 회칙은 1984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.

본 회칙은 1989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본 회칙은 1992년 7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본 회칙은 1997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본 회칙은 2001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.